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31

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 : 임이자·안상훈·유용원

조정훈・김위상・조지연

김장겸 · 김용태 · 우재준
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경북 의성,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,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, 대형화되는 추세 에 있음.

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3의2.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	제9조(사업)		
사업을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3의2.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		
	관리 및 지원		
4. ~ 14. (생 략)	4. ~ 14. (현행과 같음)		